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

전주북일초등학교

1 배경

- 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 기회 제공 확대에 따른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나. 직접적인 지원으로 학생·학부모 수요에 따른 방과후학교 수강을 통해 자기 개발 및 학업성취도 제고

2 세부 운영 계획

가. 추천 일정

구 분	대 상	시기	담당	비고
자유수강권 이용 신청 안내	재학생 및 신입생	3월	담당자	
전년도 대상자 지속 수강 안내	전년도 자유이용권 지원 대상자	3월	담당자	
교육비 대상자 선정	1순위, 2순위 결정	5월	학교(NEIS)에서 대상자 확인	
	3순위(학교장 추천자) 결정 4순위(다자녀, 다문화 추천자) 결정	5월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자유수강권 예산 신청	1, 2, 3, 4순위자(한국GM자녀 포함)	6월	담당자	
환불 대상자 파악 후 환불	선정 이전 수익자 부담자	6월	담당자	
대상자 관리	자유수강권 이용자	연중	담당자	출석부
정산 보고		2월		

나. 지원대상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법정 한부모가정 자녀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자녀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 (3순위) 학교장 추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소득·재산 조사 결과 탈락하였거나,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학생 중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 한국GM 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실직자 자녀 고려(학교장 추천 작성 양식 활용)
 - 가계 소득·재산 증빙이 어려우나, 담임교사 면담 등을 통해 가계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 선정비율: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지원 대상자(5.31.자 기준) 중 1순위 및 2순위를 합한 인원 수의 15%까지으로 추천(소수점 이하 버림 처리)
 - (4순위) 다자녀, 다문화 추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다자녀 추천
 - 1순위, 2순위를 합한 인원 수의 10%까지 범위 내에서 선정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부터 지원함
 - 다문화 추천
 - 1순위, 2순위를 합한 인원 수의 10%까지 범위 내에서 선정
 -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 자녀 지원
- ※ 학교장 추천 및 다자녀, 다문화 추천은 반드시 학생복지심사위원회(교육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지원 신청 학생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중복 지원 제외 대상>

- 국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교육부에서 직접 지원(단, 한국GM 추천은 도교육청에서 지원)
-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교육부(국립), 시·도교육청(공·사립)에서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 지원내용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최대 80만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과, 특기적성 및 돌봄교실)을 수강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최대 80만원까지 지원 가능

예시) A학생(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이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중도 포기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B학생(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에게 80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학교별 교부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유수강권의 월별 사용한도 및 수강 강좌 수 제한 없음
- 1인당 연간 사용 금액 초과 후 수강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수익자 부담으로 수강 해야 함

라. 지원범위

- 본교, 타교, 공공기관, 각종 직업기술훈련기관, EBS스스로배움터(온라인수강)*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강료를 지원하며,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직접 지원 불가
- 수강료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강사료, 도서 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 등의 경비를 의미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정 내의 현장학습 및 체험 활동 경비(입장료, 대여료, 교통비) 포함
- 지원범위 제외 대상
 - 일회성 프로그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수시로 운영되는 방과후 현장학습 및 체험활동
 - 교육과정 내 현장체험학습 경비 등
 - 사설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수강료

※ EBS 스스로 배움터 개요

- EBS 스스로 배움터란?
 -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지원하에 진행
 - 학습 큐레이터(강사)가 학생 개개인의 학습 성향과 학업능력을 분석하여 1:1 맞춤형 피드백 제공
 - 스마트 폰, PC, 탭 등 각종 스마트 기기를 통해 장소와 시간에 관계 없이 간편하게 동영상 강의 이용
 - 도입 배경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 섭외가 어려운 농어촌·도서벽지 지역 이용 가능
 - 감염병 발생 등으로 학교 휴업 중 자기주도적 학습 가능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의 활용률 제고
 - 추진방법
 - 학교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개설 가능
 - 학교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개설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이용 가능
 - 수익자부담이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의 경우 지원금으로 지원 가능(EBS 스스로 배움터 센터에서 출결확인하여 학교로 청구서 제출)
 - 교육비: 인당 월 25,000원, 연 300,000원
 - 신청기간: 2023.3월 중(연중 수시신청 가능), 교육기간: 2023.3~ 2024.2.29.
 - 개설과목 등 기타 사항 참조: EBS 스스로배움터 <http://ebssro.com>
- ※ 줌을 통한 쌍방향 학습 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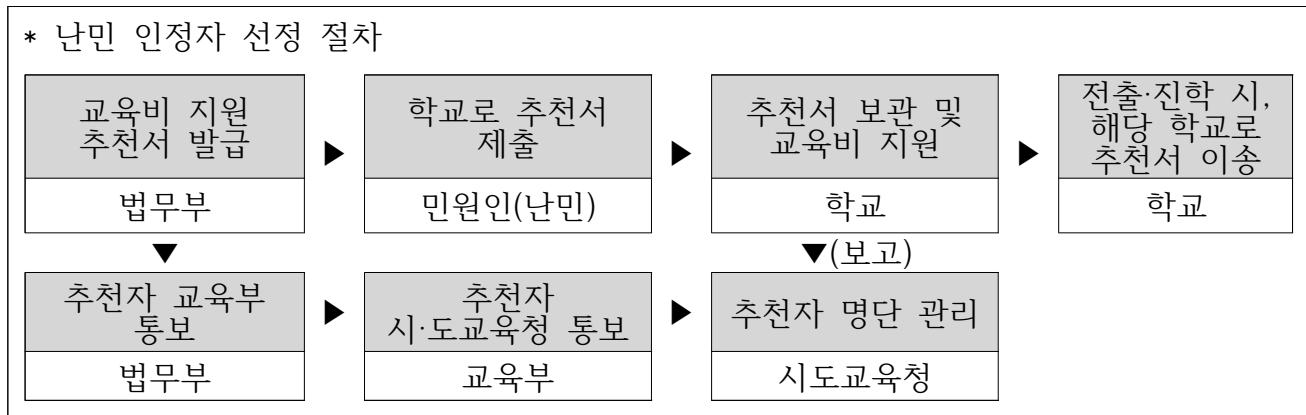
마. 지원 대상자 선정

1) 저소득층 수급 자격 및 소득 기준에 따른 신청

신청	조사 결과 송부	보장 결정	나이스로 결과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모가(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온라인 -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복지로)에 신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e음’에서 ‘학교(NEIS)’로 조사 결과 송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NEIS에 통보된 내용을 심사 작업 진행 후, 학교장 결재를 받아 심사 결과 확정(교육복지위원회 개최 불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 결과를 신청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통보◦ 텔락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 명확히 안내

2) 저소득층 수급자격 및 소득에 따른 지원자 외 선정방법(neis로 자격이 자동전송되지 않는 지원자)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 등)

- 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자녀(※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함)
 - 학교로 전송되는 조사 결과에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통보되지 않으므로 보훈처 협조를 통하여 추후 명단 송부 예정

※ 초등학교의 경우, 명단 확인이 어려워 학교 자체적으로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보훈자격 확인 필요

학교장 추천대상자 선정(예산 범위 내 지원)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 제2호
 - 대상 : 소득·재산조사 결과 탈락 학생, 미신청 학생,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예) - 부양의무자의 사망, 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부모의 이혼, 가계 파산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갑작스러운 실직에 의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채권 압류 및 기타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지원 대상자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을 간병하는 학생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등인 경우,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거나, 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미등록이주아동(불법체류자의 자녀 등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학생) 등 기타 담임교사, 교육복지사 등과의 상담 또는 추천을 거쳐 가정환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한국GM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및 비정규직 해고에 따른 실직자 자녀 중 5.31일 기준으로 1,2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교장 추천으로 우선 고려

- 절차: 보호자 면담* → 보호자 동의하에 담임교사가 추천서 작성 → 교내 교육복지 위원회 심의 후 지원 대상자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비 지원
 - * 교육비 신청 탈락 사유 또는 신청할 수 없는 예외적 사유 등을 확인하고, 학교장 추천자로 선정될 경우 선정된 자의 정보가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 등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안내
- 학교장 추천 시 제출 서류
 -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실직급여 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구직필증,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 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의료기관 치료영수증 및 진단서 등
- 학교 교육복지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지원(나이스 처리 병행)
 -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관
 - 부득이 선정자 외부공개가 필요한 경우, 학생 이름은 가명이나 기호로 처리
- 학교장 추천대상자는 해당 학년도에 한해 지원하며, 다음 학년도 지원을 희망할 경우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거나, 다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함
- ※ 학교장 추천비율: 1, 2순위 학생수의 15%까지로 선정
 - (자유수강권 지원 선정 학생 수: 2023.5.31. 기준)
- ※ 자유수강권 지원 학생 수가 15명 이하인 경우 학교장 추천 지원 가능 학생 수는 2명으로 함
 - 다자녀, 다문화 추천대상자 선정(예산 범위 내 지원)**
 -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 1순위, 2순위를 합한 인원수의 10%까지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가능함
 - 다자녀: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셋째 자녀부터 적용)
 - 다문화: 주민등록등본('국적 취득에 의한 신규등록' 확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추진절차: 학교장 추천 절차와 동일
- ※ 공정한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유형별 신청 서류 및 제출 서류가 추가 요청될 수 있음. 추후 신청 안내장에 자세히 안내할 예정임.

바. 자유수강권 집행 및 운용

- 1) 예산집행
 - 자유수강권 실질적 소요 예산을 파악하여 적정하게 집행
 - 실제 활용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한도액까지 일률적으로 예산 신청하는 것을 지양

- 불용예상액을 사전에 파악하여 추가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효율적 집행 방안 마련
 - 학교 여건에 따라 지원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자유수강권이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지원(2023학년도 1인당 지원 금액 기준은 연 60만원이나, 학교에서 1인당 지원 금액을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원 가능(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80만원까지 지원 가능))
- 2) 운영 및 관리
-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 2022학년도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는 2023학년도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 선정과 무관하게 2023학년도 1/4분기까지 지원 가능
 - * 2/4분기부터 지원 여부는 ‘행복e음’으로부터 학교(NEIS)로 통보해 온 조사 결과와 교육복지위원회를 통해 추후 확정
 - 월별 사용 한도 및 수강 강좌 수의 제한이 없으므로 과목당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제한적으로 지원하거나, 분기별로 제한하여 지원하지 않도록 유의
 - 지자체, 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기부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
 - 매월 학생별 지원 대장 및 근거 서류(심의 결과, 회의록 등)를 정리·보관하여 예산이 목표와 용도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나이스 입력 권장)
 - 전출·전입 학교는 협조공문 등을 통해 이미 지원한 금액 확인 후 남은 금액 지원
 - 방과후학교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의 자유수강권 이용을 제한하는 등 제재 기준 마련 (감사원 교육 감사단 제1과-1640, ‘13.6)
 - * 사전 안내를 통해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연속 출석률이 50% 미만인 학생의 경우 지원 중지
 - 교육비 지원 학생의 개인정보 자료 관리 철저
 - 교육비 지원 학생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점검하고, 담당자는 취득한 개인정보 철저히 관리
 - 저소득층 학생들의 거부감 또는 낙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유도
 -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학생을 일반학생과 구분하여 프로그램 개설·운영 금지
 - 부정수급자 보장 비용 징수 및 고발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비용 징수 및 고발조치*
 - *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10(비용의 징수), 제67조 제4항(벌칙)
 - 지원자의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시군구청장에 부정수급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고, 시군구청은 재소사를 거쳐 확인된 부정수급 내용,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교육청에 통보

3) 안내 및 홍보

-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가 2023학년도 신학기 시작과 동시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 문자 등을 통해 사전 안내
 - 학교는 학생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수익자부담경비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추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교육비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익자부담경비 환불 됨을 안내
 -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상급학교 진학생 등 학령기 전환 학생이 지원 대상자 선정에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 점검
- 법정자격 대상자(기초, 한부모, 차상위)*의 경우,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교육비 납부 독촉 금지 및 CMS 계좌 인출 유예
 - *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명단 확인 가능하며, 신입생 또는 신규 신청자의 경우 법정 자격 대상자 증명서를 해당 학교로 제출하여 교육비 납부 유예 가능
 - * 심사 결과 교육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수강료를 납부해야 함을 학부모에게 안내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지원 취지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 강화
- 자유수강권 관리 기능 개선 및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나이스 방과후학교 시스템* 홍보 및 적극 활용
 - * 자유수강권 지원금 및 관련 데이터 관리, 자유수강권 지원 및 사용현황 조회 등

※ 위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및 각종 양식은 2023 전북방과후학교 운영계획·길라잡이(전북교육 2023-007)와 2023 전북방과후학교 운영길라잡이 서식(전북교육 2023-007), 전라북도교육청 미래교육과-2023년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지원계획에 준함.